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031,898,813 | 30,956,964 |
| 일반회계 | 1,010,600,997 | 30,318,030 |
| 특별회계 | 21,297,816 | 638,934 |
| 기타특별회계 | 21,297,816 | 638,934 |
| 의료급여기금 | 1,724,800 | 51,744 |
| 주차장 | 18,564,326 | 556,930 |
| 지하수관리 | 996,235 | 29,887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| 12,455 | 374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,561,14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정리추경 후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

※의존재원 표시

국비→국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→균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
특별조정교부금→특